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9월 3일(충청북도교육감)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9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2004년 9월 16일(제3차 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교육국장 김전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이 실내수영장으로 전환됨에 따라, 수영장 관리·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영장 관리·운영 주체를 **충청북도 학생회관으로 변경**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현행 충청북도 학생회관 소재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, 수영장이 소재한 **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를 추가**하였음(안 제17조제2항)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지용옥)

○ 금번 제출된 "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"은,

- 제85회 전국체전을 위해 실내화한 청주농고 수영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리주체를 충청북도 학생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, **향후 종합적인 관리·운영방안**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학생회관의 수영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에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 제17조(설치) ①(생 략) ②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.	**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** 제17조(설치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-----. 단, 학생회관의 수영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에 둔다.

관계법령발췌서

지방자치법

제135조 (공공시설)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.

③제1項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

제3조(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) ①도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.)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

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청·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청·소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청·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

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는 사무중 제2청·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청·소의 장에게 위임한다.

④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.